



「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」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및 해설(2)

| 이 혁 교수 | 박문각종로공인중개사학원

08.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할 수 있으며, 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.
- ② 「건축법」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 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,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.
- ③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,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.
- ④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
- ⑤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.

08. 정답 ②

- ① 감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한다.
- ③ 고급주택은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택과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.
- ④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.
- 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09.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,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- ㄴ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·징수할 수 없다.
- ㄷ.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.

- ① ㄱ
② ㄴ
③ ㄱ, ㄷ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
09. 정답 ⑤

- ⑦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-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- ⑨ 재산세 물납 부동산의 가액 평가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.

10.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21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.
- ②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.
- ③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.
-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·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.

10. 정답 ⑥

- ①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.
- ②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.
- ③ 세대별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유자별로 합산한다.
- ④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폐지 되었고 분납은 가능하다.

11.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.
- ② 3주택(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)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.

- ③ 2주택(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)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.

- ④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.
- 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·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.

11. 정답 ⑤

3주택(전용면적 40㎡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서 제외)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.

12.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
- ② 「도시개발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
-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
- ④ 지상권의 양도
- 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

12. 정답 ②

「도시개발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

◆ 과세대상 종합 ◆

구 분	양도소득세 과세대상	과세대상 제외
	(1) 토지 및 건물 (2)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·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	· 지역권 · 기계장비 ·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
부동산 등	(3) 기타자산 ① 특정법인 주식 ②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③ 특정시설물 이용권·회원권 ④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⑤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	·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
주식등	(4) 주식 ① 상장주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⑦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⑧ 장외양도분 ② 비상장 주식	·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시
파생상품등	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	
신탁수익권	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	

13.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
-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
-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 없이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
- 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·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
- 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

13. 정답 ②

- ②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
-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
- ③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경우 모두 지분변동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

- 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
 ⑤ 매매원인 무효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제되어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.

14.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?

-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: 등기부·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·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
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: 증여를 받은 날
 ③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: 사업인정고시일
 ④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)를 한 경우: 등기부·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
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: 상속개시일

14. 정답 ③

수용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, 수용 개시일,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한다.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판결 확정일로 한다.

15. 2013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21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,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)

- 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, 환산취득가액, 감정가액,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.
 ② 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.
 ③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.
 ④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/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.
 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.

15. 정답 ①

※ 양도차익 계산

구분	원 칙	예 외
토지, 건물, 부동산에 관한 권리	실지거래가액	1. 추계결정(실지거래가액 미확인 및 불인정시)
1. 주식 또는 출자지분 2. 기타자산	실지거래가액	추계결정가액
		참 고 추계결정가액의 적용순서

- ① 취득가액 : 매매사례가액 \Rightarrow 감정가액 \Rightarrow 환산취득가액 \Rightarrow 기준시가
 ② 양도가액 : 매매사례가액 \Rightarrow 감정가액 \Rightarrow 기준시가

☞ –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적용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.
 –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양도가액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6.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2021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21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.
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.
 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.
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.
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다.

16. 정답 ②

- ① 양도일(3월21일)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(5월 31일까지)예정 신고하여야 한다.
 ② 양도소득세 분납금액
 2000만원 이하: 1000만원 초과금액
 2000만원 초과: 100분의 50이하 금액
 따라서 16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인 600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.
 ③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초과금액인 10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.
 ④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.
 ⑤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.